

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
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차인영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0. 20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623호로 2025년 10월 2일 차인영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어린이 통학로에서 공사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세부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여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어린이 통학로 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에 교통안전 조치, 학교 협의, 안내표지 설치, 위해요소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 10. 2.~2025. 10. 15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526건으로,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, 매년 400~500건 수준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1)<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어난 교통사고>

(단위: 건)

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483	523	514	486	526

- 어린이는 뇌의 인지 및 판단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하고, 돌발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, 도로 상황을 인지하거나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 또한 미흡함.
-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구조물·장비 등이 밀집한 공사현장에서는 낙하물이나 대형차량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특히 높으며, 레미콘·포클레인 등 대형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작은 어린이가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사현장 인근 어린이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한 실정임.
-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도록 하여,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전임.

1) 출처: 경찰청(강경숙 의원 요청 자료)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0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)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명시함.
 - 세부적으로는 ▲공사 시 교통안전 대책 ▲공사장 출입구 위치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▲공사안내표지 설치 ▲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▲도로부속물 설치·관리 ▲공사 중 위해요소 관리 ▲보행 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예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,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안전확보 조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전임.
- 이를 통해 교통안전 대책 마련, 신호수 배치, 학교장과의 사전 협의 등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을 체계화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

도로교통법

제11조(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)

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영유아(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12.30>

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(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(이하 "장애인보조견"이라 한다)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5.8.11, 2017.7.26>

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(장구)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0.6.9>

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
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15.8.11, 2020.6.9>

1.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
2.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
3.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
4.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(65세 이상

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[전문개정 2011.6.8]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

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.28, 2014.11.19, 2015.7.24, 2017.7.26, 2018.3.27, 2021.10.19, 2023.4.18>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5.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3.4.18>

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3.27>

④ 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12.24, 2020.12.22>

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

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12.24, 2023.4.18, 2024.1.30>

1.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 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
 2. 속도 제한, 횡단보도, 기점(기점) 및 종점(종점)에 관한 안전표지
 3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- 3의 2. 방호울타리
4. 그 밖에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